IMO 제89차 해사안전위원회(MSC)

Ⅰ. 일반사항

○ 회 의 명 : IMO 제89차 해사안전위원회
(Maritime Safety Committee)
○ 기간/장소 : '11. 5. 11~5. 20(8일간)
IMO Headquarters, 영국 런던
○ 참 석 자 : 정부대행검사팀 최기중 책임검사원

Ⅱ. 주요 의제 목차

1. [의제 9] 복원성, 만재흘수선 및 어선안전 전문위원회(SLF) 회의결과 보고사항 -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이행에 관한 협정서」 관련

Ⅲ. 주요 의제별 논의경과 및 회의결과

의제 9	복원성, 만재흘수선 및 어선안전 전문위원회(SLF) 회의결과 보고사항

1. 1993 토레몰리노스의 의정서에 대한 개정안에 관한 의견(MSC 89/9/1, 사무국)

가. 의제 개요

○ SLF 53차에서 준비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개정안에 대한 제안 및 추가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임
○ 협정 초안의 부속서 제1장(총칙) 제2(14)규칙에서 "기선"이라 함은 선체중앙에서 용골선과 교차하는 수평선을 의미하는 조선용어에 대한 정의로 명시
○ 어선안전에 관한 특별작업반(ISWG FVS) 회의에서 유엔해양법협약상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EEZ 및 EEZ내에 위치한 공동조업구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93 의정서」의 적용을 면제하기로 합의
○ 부속서의 "기선"의 정의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기선"의 의미와 달라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속서의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

나. 논의경과

○ SLF 51은 1993 의정서 시행의 문제점에 대한 2004 베이징 지역 세미나의 결과(SLF 51/INF.7)를 주목하고 토레몰리노스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였음
○ SLF 52는 1993 의정서의 발효를 촉진할 방안으로(기존 의정서의 요건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새로운 협약인 협정을 통하는 방안외에 총회결의를 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두가지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되 SLF 53에서 양자 택일하기로 함
○ 로드맵상의 Time Table에 따라 SLF 53에서 "의정서 시행에 관한 협정(총회결의)"초안 및 세부요건에 대한 개정사항을 검토하였고 길이와 총톤수의 선택적 적용제도 및 점진적 시행제도의 도입 등에 합의하였으며 총회결의 대신 협정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MSC 89에 권고하였음

○ 주요 개정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길이와 총톤수의 선택적 적용제도 도입 : 길이 24m, 45m, 60m 및 75m는 국제총톤수 300톤, 950톤, 2,000톤 및 3,000톤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관청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점진적 시행제도 도입 : 부속서 제IX장(무선통신)은 주관청이 의정서 발효후 최대 10년까지 적용을 유예할 수 있음

○ 그러나, 발효요건의 개정 등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MSC 89에서 논의하기로 함

다. 의제 내용

○ 어선안전에 관한 특별작업반회의 기선(유엔해양법협약상)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EEZ 및 공동조업구역내 조업 어선에 대하여 의정서 적용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음

○ 한편,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기선의 정의가 아닌 기선(조선용어)의 정의가 이미 제I/2(14) 규칙에 존재하나 의정서 요건에서 사용되지 않음으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의를 삭제할 것을 주장함

라. 우리나라 현황

○ 우리나라는 의정서 발효시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및 항만국통제 등의 이유로 주요 어업국인 일본 및 중국과 함께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를 가입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즉각적인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의 시행은 우리나라 수산업계에 충격을 줄 수 있음

○ 현재 논의 중인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시행에 관한 협정(총회결의)의 개발과 관련하여 일본 수산청 및 중국 어업선박 검험국과 공동 대응을 위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마. 회의결과

○ 본회의 최종 결정사항
- 협정안에 포함된 "baseline"의 삭제 제안에 대해서 스페인은 "baseline"은 조선공학적 측면에서 필요함을 발언하였으나, 대다수의 국가들이 삭제를 지지하여, 위원회는 협정안에서 "baseline" 및 관련 footnote를 삭제하는데 동의함

2. 93 의정서 시행에 관한 협정의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MSC 89/9/2, 사무국)

가. 의제 개요

○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시행에 관한 협정의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를 제안하는 문서임

나. 의제 내용

○ SLF 53('11. 1)에서 IMO 사무국은 사안이 시급하고 협정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시 비용문제를 고려하여 동 협정을 제27차 IMO 총회('11. 11)에서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외교회의에서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 사항을 검토하여 MSC 89에 문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음

○ IMO 사무국은 MSC 89/9/2로 제출한 문서에서 그 동안 IMO는 외교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여 왔음을 고려하여 2012년 모든 국가가 참석하는 3일간의 외교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함

○ 또한, 3일간의 외교회의를 개최하는데 있어 2012년 가을 개최예정인 MSC 91의 개최 비용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 외교회의는 2012년 가을 개최될 MSC 91 직전에 3일간 개최되고 바로 이어 MSC가 5일 일정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됨

다. 회의결과

○ 본회의 논의사항

①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협정안」이 2012년에 외교회를 통해서 채택되어야 한다는 사무국의 제안에 대하여 다음 2가지 Option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1 외교회의에서 채택 – 비유럽국가

.2 총회에서 채택 – 유럽국가

② South Africa는 2012년에 자국에서 외교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임을 위원회에 보고함

③ 협정체결 형태에 대한 Legal Division Director의 공식 입장

.1 외교회의에서의 채택은 관련 협정의 사전 6개월 이상의 회람이 필수적임

.2 총회에서의 채택은 위원회의 결과보고서로써 회람을 대체함

.3 현재 IMO의 Rules of Procedure에 따르면, 협정의 총회 채택은 1/2이상의 참석 및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MSC Secretary (Mr. Sekimizu)의 2/3이상의 참석 및 투표에 대한 필요성 제기에 따라 위원회는 총회 채택이 C 106('11. 6~7)에서 결정되어진다면 2/3이상의 참석 및 투표 원칙에 대한 특별 규정을 총회가 채택하도록 권고한 것에 동의함

○ 위원회 최종 결정사항

– 위원회는 상기 협정안을 외교회의 또는 총회에서 채택 여부를 최종적으로 제106차 이사회(C 106, '11. 6~7)에서 다음 3가지 Option 중에서 채택하는데 동의함

.1 A 27('11. 11)에서 협정을 채택하는 방안

.2 MSC 91('12. 11)의 회기 중 또는 MSC 91 ('12. 11) 전에 3일간의 외교회의를 통해서 협정을 채택하는 방안

※ 회의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정 방안임

.3 South Africa가 외교회의 주최국이 될 수 있음을 C 106('11. 6~7)에 통보하는 조건으로, 2012년에 South Africa에서의 외교회의를 통해서 협정을 채택하는 방안

3. SLF 53 결과에 대한 의견(MSC 89/9/3, 노르웨이)

가. 의제 개요

○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를 가능한 빨리 발효시키기 위해 용이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법적, 기술적 선택에 대한 SLF 53차 결과에 대한 의견 및 어선의 안전에 대한 1977 토레몰리노스 협약과 관련된 1993 의정서 이행에 대한 부록 5장의 개정을 제안하는 문서임

나. 의제 내용

○ SLF 53에서 전승무원의 200%를 수용 가능한 생존정을 탑재하는 것에는 합의되었으나 탑재척수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못하고 MSC 89에서 결정하도록 함

○ 노르웨이는 어느 하나의 생존정이 유실되거나 사용불능일 경우, 한쪽 현에서 다른 한쪽 현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전승조원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생존정을 비치하도록 의정서 개정안 제VII/5(5)규칙에 추가조항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시함

다. 회의결과

○ 위원회 최종 결정사항

– 상기 제안사항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가들이 노르웨이의 제안을 지지함에 따라, 위원회는 양쪽 현에 각각 전승무원의 100%를 수용할 수 있는 생존정을 비치토록 협정안의 Chapter VII regulation 5에 새로운 paragraph(5bis)를 추가하기로 결정함

4. 공해상 조업허용 어선에 관한 정보(MSC 89/9/6, FAO)

가. 의제 개요

○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개정 초안과 관련된 공해상 조업허용 어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임

나. 의제 내용

○ SLF 53은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를 EEZ내에서 조업하는 어선에는 적용면제하는데 합의하였음을 고려하여 길이 24m이상 어선으로서 전 세계의 공해상 조업 허용 어선 척수를 기초로 하여 발효요건의 개정을 검토할 것에 동의하였고 FAO에 대하여 FAO에 제출된 공해상 조업 허용 어선척수에 관한 최신 자료를 제출해 줄 것과 선적국에 자국의 길이 24m 이상 어선으로서 공해상 조업 허용 어선 척수를 IMO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따라서, FAO는 2011년 3월 현재, 각국이 제출한 공해상 조업어선 척수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공해상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선 척수 : 6,168

– 이중 길이 24m이상 어선 척수 : 5,415

○ SLF 51('08. 7월)에서 IMO가 「93 의정서」의 신속한 발효를 위하여 의정서의 발효요건 개정을 추진

– 「93 의정서」발효요건 : 1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한 국가에서 보유한 길이 24m 이상인 어선의 총 수가 14,000척 이상

– 비준 현황 : 17개국이 비준하였으나, 비준한 17개국이 보유한 길이 24m 이상인 어선의 총 수는 3,000척으로 미 발효중

○ SLF 53에서 200해리 이내의 EEZ 및 EEZ 내에 위치한 공동조업구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93 의정서」의 적용을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길이 24m 이상인 어선으로서 공해상에서 조업하도록 허용된 어선의 척수를 기준으로 발효요건을 정하기로 합의함

○ SLF 53에서 FAO는 당시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공해상 조업허용 길이 24m 이상인 어선의 척수가 약 6,000척(6,190척)임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3개(안)을 제안함

– 제1안 : 비준국 15개국 유지, 어선 척수를 3,000(6천척의 50%)척으로 감(유럽)

– 제2안 : 비준국 20개국 확대, 어선 척수를 1,800(30%)척으로 감(유럽)

– 제3안 : 비준국 30개국 확대, 어선 척수를 1,800(30%)척으로 감(일본)

* 동 FAO 자료에는 주요 어업국인 우리나라, 중국 및 러시아 등의 공해상 조업허용 어선 수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SLF 53에서 정확한 데이터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FAO 및 각 국에 MSC 89 개최('11. 5월) 전에 공해상 조업허용 길이 24m이상인 어선의 척수에 관한 최신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 이에 따라, FAO는 공해상 조업허용 길이

24m이상인 어선 척수가 5,415척임을 동 문서로 제출

다. 회의결과

○ 본회의 논의사항

① 중국 발언내용

- 중국은 MSC 88('10. 11~12)에서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척수에 대한 정보(788척)를 IMO에 제출함
- 중국은 협정안에 "operation on the high seas" 문구 삽입제안, 전 세계어선의 50%를 협정의 발효요건으로 하는 것 및 현재 FAO의 어선척수에 대한 자료는 공해상 조업하는 어선의 척수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해상 조업어선 중 24미터 이상의 어선에 대한 척수정보를 협약발효요건 결정 근거로 이용되어야 함을 발언함

② 일본국 발언내용

- 일본국은 협약의 발효요건으로 제안된 3가지 Option중 Option 3(30개국 및 1,800척)을 지지함

※ 협약이 일부 한정된 국가들에게만 적용되어서는 안되고 폭넓은 지리학적 적용을 위해 30개국안(Option 3)을 지지함

③ 우리나라 발언내용

- 협약의 발효요건 결정 시 적용 Data로써 현재 FAO가 IMO에 제공한 어선척수가 아니라 공해상 조업허용어선의 척수를 토대로 결정되어야 함
- 우리나라도 IMO에 공해상 조업허용어선에 대한 척수 정보(379척)를 제출함
- 협정의 발효요건으로 제안된 3가지 Option 중 Option 1(15개국 및 3,000척)을 지지함

※ 우리나라 발언내용이 최종 보고서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다시 우리나라의 발언내용을 반영토록 발언함(MSC Secretary Mr. Sekimizu에서 동 내용을 문서로 전달 → 향후 최종 MSC report에 반영 예정임)

④ 유럽국 발언내용

- 대부분의 유럽국들은 새로운 제안으로 15개국 및 1,800척을 협정의 발효요건으로 하고, 전 세계어선의 30%를 협정의 발효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언함
- 벨기에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국들은 협정의 요건보다 강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고, EC의 조업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적 어선 및 EU 회원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어선에 대해서 그러한 강화된 요건이 적용되어야 함

○ 위원회 최종 결정사항

- 위원회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협정의 조기 발효를 위해 유럽에 의해서 지지된 새로운 제안(15개국 및 1,800척)에 찬성한 사항에 주목하고,
- 협정안의 Article 4 (1) 및 (2)에 꺽쇠괄호([ ])를 그대로 남겨두기로 결정함

※ 협약 발효요건 및 협약안의 내용은 C 106('11. 6~7)의 결정에 따라 외교회의 또는 총회에서 결정 예정임

5. 공동조업구역의 정의에 대한 개정 의견(MSC 89/9/7, FAO)

가. 의제 개요

○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의 개정 초안과 관련한 "공동조업구역"의 정의에 대해 제안하는 문서임

나. 의제 내용

○ 어선안전에 관한 특별작업반(ISWG FVS, 2010. 9)은 EEZ 및 공동조업구역내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하여 의정서 적용을 면제하는데 합의하였음

○ FAO는 공동조업구역(Common Fishing Zone)에 대한 정의를 제시함

다. 회의결과

○ 위원회 최종 결정사항

- FAO의 공동조업구역(Common Fishing Zone)의 정의에 대한 수정제안에 대해서, 벨기에가 제안한 "or other authorized vessels"을 추가하여 협정안의 부속서 the draft amendments to the 1993 Torre-molinos Protocl에 반영하도록 결정함

6. SLF 53 결과에 대한 의견(MSC 89/9/9, 아르헨티나)

가. 의제 개요

○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를 가능한 빨리 발효시키기 위해 용이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법적, 기술적 선택에 대한 SLF 53차 결과에 대한 의견 및 어선의 안전에 대한 1977 토레몰리노스 협약과 관련된 1993 의정서 이행에 대한 부록 5장의 개정을 제안하는 문서임

나. 의제 내용

○ SLF 53에서 전승무원의 200%를 수용 가능한 생존정을 탑재하는 것에는 합의되었으나 탑재척수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못하고 MSC 89에서 결정하도록 함

○ 아르헨티나는 생존정의 배치가 선박의 통상작업을 방해하는 경우 전승무원의 200%를 수용할 수 있는 생존정(2척 이상)을 한 쪽 현에만 탑재할 수 있도록 의정서 개정안의 제VII/5(5)의 개정을 제안함

다. 회의결과

○ 위원회 최종 결정사항

- 상기 제안사항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가들이 노르웨이의 제안을 지지함에 따라, 위원회는 양쪽 현에 각각 전승무원의 100%를 수용할 수 있는 생존정을 비치토록 협정안의 Chapter VII regulation 5에 새로운 paragraph (5bis)를 추가하기로 결정함